성주군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안
검토보고서

1. 제 안 자 : 성주군수

2. 제정이유

○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지역문화예술단체 육성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주민의 문화복지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○ 지역문화예술단체에 대한 문화예술 관련 사업 및 시설운영의 위탁 근거 규정(안 제5조)

○ 생활문화 지원에 관한 사항(안 제6조)

○ 생활문화 시설의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사항(안 제7조)

○ 지역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 및 시설의 제공에 관한 사항(안 제8조)

4. 참고사항

가. 관련법령 : 「문화예술진흥법」 및 「지역문화진흥법」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참조 (131,210천원정도)

다. 기 타

- 규제심사 : 해당사항 없음
- 성별영향분석평가 : 원안 동의
- 입법예고 : 의견없음.(2015.9.24. ~ 2015.10.14)

5. 검토의견

❍ 본 조례(안)는 「지방재정법」 개정에 따른 지역문화예술단체 육성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, 지역주민의 문화복지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.

❍ 주요 제정 내용은

- 안 제5조는 지역문화예술단체에 대한 문화예술 관련 사업 및 시설운영의 위탁 근거

- 안 제6조는 생활문화 지원에 관한 사항

- 안 제7조는 생활문화 시설의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사항

- 안 제8조는 지역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 및 시설의 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고 있습니다.

❍ 법리 검토결과 관련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입법 입안 심사 기준에 부합되므로 본 조례를 제정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.

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